

[TV 조선] AI 나눔이 시연 샘플

작성자 : 주혁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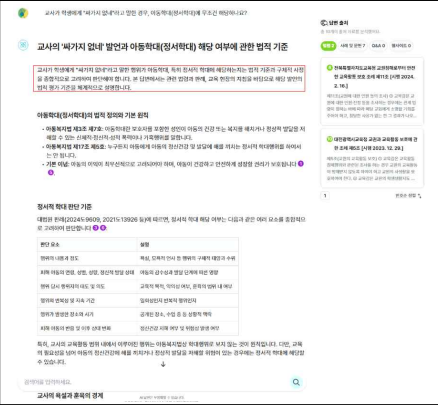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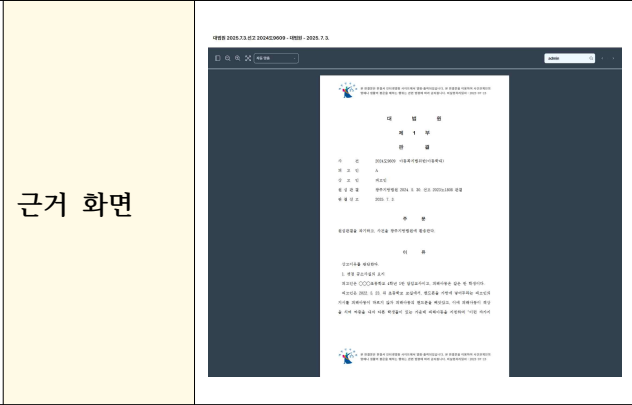
작성일 : 260306

1. 학폭 GPT

주제 : 졸업 후 조치 결정 사안, 생기부 작성 기준	
테스트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3 학교폭력 사안이 졸업 전 심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 후 조치가 결정된 경우, 학생생활기록부 마감 이후에도 기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이 졸업 전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졸업 후에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답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g127
원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가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교폭력 사안은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 전 심의위원회 의결, 조치 통보, 학생부 기재 완료
답변 화면	
근거 화면	

2. 교권 GPT

주제 : 폭언("싸가지 없네")의 아동학대(정서학대) 여부	
테스트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학생에게 "싸가지 없네"라고 말한 경우, 아동학대(정서학대)에 무조건 해당하나요?
답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학생에게 "싸가지 없네"라고 말한 행위가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기준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욕설: "싸가지 없네"와 같은 표현은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언사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한두 차례의 발언이 교육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법원 2025.7.3.선고 2024도9609
문서 정보 요약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로, 피해 아동이 수업 중 핸드폰을 가방에 넣지 않자 이를 빼앗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없네."라는 발언을 하여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됨.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훈육의 범위를 넘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내림.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아동복지법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음.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p>정도의 행위여야 함. 피고인의 발언은 부적절하나, 피해 아동의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함. 피해 아동의 반응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음.</p> <p>•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기로 결정함. 이는 원심이 정서적 학대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임.</p>
<p>답변 화면</p>	 <p>근거 화면</p> 

3. 복무 GPT

주제 : 육아휴직 중 검직(유튜브)	
<p>테스트 질문</p>	<p>• 육아휴직 중 교사의 유튜브 활동(채널 운영·수익 창출)은 검직으로 인정되며 허용되나요?</p>
<p>답변 예시</p>	<p>• 육아휴직 중인 교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는 검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검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p>
<p>답변 근거</p>	<p>• 2025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 pg 65</p>
<p>원문 내용</p>	<p>III. 검직허가 (가) 검직 허가 대상</p> <p>①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p> <p>• (예)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이고,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p> <p>②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p> <p>• (예) 아프리카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가능</p> <p>(나) 허가기준: 검직 허가권자는 소속 학교장</p> <p>① 학교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검직허가</p> <p>*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p> <p>② 학교장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 교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직 불허, 콘텐츠삭제 요청, 활동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p>

